

#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속고시원 운영 규정

제정 2000. 11. 22.                    개정 2003. 5. 1.  
개정 2007. 6. 26.                    개정 2009. 7. 15.  
개정 2010. 10. 29.                    개정 2013. 3.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고시와 사회진출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속고시원(이하 “고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고시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습공간과 정보 제공
2. 학력증진을 위한 특별지도
3. 기타 고시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고시원에 원장 및 약간명의 지도교수를 두되, 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겸임하고, 지도교수는 원장이 임명한다.

② 고시원의 행정업무는 사회과학대학·인문예술대학행정실에서 관장한다.

③ 고시원에는 국가고시와 사회진출에 필요한 각종 시험 준비반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고시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사회과학대학·인문예술대학행정실장과 지도교수 및 원장이 임명하는 교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13. 03. 08)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시원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고시원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고시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자문위원) 고시원 업무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경비부담) 고시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자 등으로부터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원생선발 등 고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0. 11.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0.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3.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